

【문18】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 ②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에 관하여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탁주(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제도에 관하여는 국민보건·탁주제조업체 과당경쟁 방지 등의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불과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입법자는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
- ⑤ 헌법은 국가가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및 공정거래의 보장에 관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19】 다음 중 헌법에서 직접 탄핵소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는?

- ① 국가정보원장 ② 검사
③ 대통령비서실장 ④ 법제처장
⑤ 법관

【문20】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 ②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조향을 둔 것은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이 처음이다.
- ③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 ⑤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토조향에 의해 그에게 바로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보았다.

【상 법 30문】

【문21】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②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문22】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②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2월내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할 필요는 없다.
- 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문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⑤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4】 보험사고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문25】 중복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될 수 없다.
- ③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
- ④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26】 다음 중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 ②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③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 ④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27】 상호계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③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경우에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제한 날의 익일에 계산이 폐지되므로 그 때서야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산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28】 어음의 기한 후 배서(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기한 후 배서는 배서의 기재에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⑤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 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2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문30】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 ②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
- 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 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다.

【문31】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 ②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까지 표시하지 않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다.
- ③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 ④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를 결하였더라도 이를 무효인 어음으로 볼 수 없다.

【문32】 상법상 선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②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선장은 해난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④ 선장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 ⑤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문33】 다음 중 선일자수표 및 횡선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일자수표란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이전에 발행된 수표를 말한다.
- ② 횡선수표에서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③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 ④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은 선일자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소구)를 할 수 있다.
- ⑤ 횡선수표에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문34】 다음 중 주주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
- ③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의결권
- ④ 주주총회의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 ⑤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문35】상법 제48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위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 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문36】어음행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 ③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 ④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 ⑤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문37】다음 중 어음의 만기 전 상환청구(소구)와 지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어음법은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을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⑤ 어음법은 인수의 전부거절이 있는 경우는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의 일부거절의 경우는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문38】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임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④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 ⑤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문39】다음 중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상법상 1인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 ②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출자 외에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가능하다.

【문40】상법상 합자조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④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문41】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할 것을 정한 **甲 주식회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상법의 입장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 회사는 설립시에 꼭 25만 주 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식은 시가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③ 甲 회사가 설립시에 30만 주를 발행하였다면 나머지 70만 주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④ 甲 회사는 설립 이후에 400만 주를 상한선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 ⑤ 甲 회사가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이 있어야 한다.

【문42】**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43】**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 ① 제소권자
- ② 제소기한
- ③ 소의 원인
- ④ 전속관할
- ⑤ 법원의 재량기간

【문44】**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는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있다.
- ②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주주, 이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45】**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다.
- ③ 발기설립에 있어서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 끝나면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④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문46】**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 ③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문47】**해상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손해 또는 비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선료
- ②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③ 등대료
- ④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⑤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문48】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류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49】상법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과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 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문50】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위 ③항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